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7 차 정 무 위 원 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CVC 외부출자·해외투자 제한 완화 등〉

■ 박수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83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 확대 .....        | 3 |
| 2. CVC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제한 완화 ..... | 7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수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6.
3. 회 부 일 : 2024. 8. 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이 더뎠지면서 지난 5월 우리나라의 생산, 소비, 투자가 지난달보다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함. 이러한 투자위축은 기업의 혁신을 위축시켜 장기적 성장동력 잠식까지 초래하고 있음. 우리나라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장기적 저성장 구도를 탈피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진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불확실성 제거, 금리인하 등의 거시경제적 여건 개선과 더불어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제도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

지난 2021년 12월 일반지주회사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을 설립·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지주사의 잉여금을 활용한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의 길이 열림. 그러나 시장의 훈풍(薰風)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일부 행위규제가 펀드조성과 투자단계에서 투자 의욕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음.

또한 금융투자의 주체인 투자회사, 설비투자의 주체인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가 면제되고 있음에도, 해당 회사들에 대한 영향력이 주식 취득보다도 약하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은 임원겸임은 신고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투자회사 및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을 통해 투자활동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이에 CVC가 투자조합을 결정하는 경우 지주회사 체제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현행 40%에서 최대 50%까지로 늘리고 총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상향(안 제20조)하는 한편, SOC 등 투자회사 등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안 제11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활발한 벤처펀드 결성을 촉진하고 위축된 벤처투자를 활성화함은 물론, 나아가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동력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 IV. 검토의견

##### 1. 기업결합 신고 면제범위 확대

- 개정안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11조(기업결합의 제한) ①·②<br>(생략)                                                                                                                                            | 제11조(기업결합의 제한) ①·②<br>(현행과 같음)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br>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br>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br>외한다.                                                                                                   | ③ -----<br>-----<br>-----<br>-----.                                                                                                  |
| 1. 2.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
|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br>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br>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br>따른 비율 이상으로 <u>소유하게</u><br><u>되거나</u> 다음 각 목의 어느 하<br>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br>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br>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 3. -----<br>-----<br>-----<br>----- <u>소유하</u><br><u>게 되거나</u> 다음 각 목의 어느<br><u>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임원</u><br><u>을 겸임하거나</u> -----<br>----- |

| 현행           | 개정안              |
|--------------|------------------|
| 가. ~ 라. (생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 ④ ~ ⑫ (생략)   | ④ ~ ⑫ (현행과 같음)   |

- ☐ 현행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운영회사),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20%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15%이상)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 즉, 현행은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대규모 취득 행위에 대하여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 다만, 투자회사의 주식을 대규모로 취득하는 경우 투자자는 통상 감독 목적으로 그 투자회사의 임원을 겸임하게 되는데 현행은 임원겸임에 대하여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함. 이에 주식취득행위에 대하여는 기업결합 신고가 면제되나 주식취득행위에 따른 임원겸임에 대하여는 기업결합 신고를 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각호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주식취득 또는 합작회사 설립에 수반하는 임원 겸임의 경우를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으로 지정하여 신고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하고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정하여<sup>1)2)</sup>, 신고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공모펀드운영회사, 민간투자사업 특수목적법인(SPC),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려는 개정안은 기업결합 신고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생각됨.

---

1) 「기업결합 심사기준」

II. 정 의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

III.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만을 심사하여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주식취득 또는 합작회사 설립에 수반하는 임원겸임인 경우

2) 개정안은 현행 제11조제3항제3호만을 대상으로 임원겸임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감안하여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경우 모두에 대하여 임원겸임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됨.

□ 다만, 개정안은 문언상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공모펀드운영회사, 민간투자사업 특수목적법인(SPC),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법인인 회사가 다른 회사의 임원이 될 수는 없으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의 건                                                                                                                                |
|-----------------------------------------------------------------------------------------------------------------------------------|---------------------------------------------------------------------------------------------------------------------------|----------------------------------------------------------------------------------------------------------------------------------------|
| 3. 기업결합신고대상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 3. -----<br>-----<br>-----<br>-----<br>-----<br><u>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거나</u> -----<br>-----<br>----- | 3. -----<br>-----<br>-----<br>-----<br>-----<br><u>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임원겸임<sup>3)</sup>을 하거나</u> -----<br>-----<br>-----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이라 한다)

## 2. CVC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제한 완화

-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의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 전문회사의 행위규제 중 외부출자 비중 제한(제4호 가목)을 현행 40%에서 50%로 완화하고 해외투자 비중 제한(제5호 라목)을 20%에서 30%로 완화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략)                                                                                                     |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br>-----<br>-----<br>-----<br>-----<br>-----<br>-----<br>-----.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조합(「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4. -----<br>-----<br>-----<br>-----<br>-----                            |

| 현행                                                                                                                                                                                                                                               | 개정안                                                                                                                                                      |
|--------------------------------------------------------------------------------------------------------------------------------------------------------------------------------------------------------------------------------------------------|----------------------------------------------------------------------------------------------------------------------------------------------------------|
|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br>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br>에서 같다)을 설립하는 행위<br>가.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br>소속 회사가 아닌 자가 출<br>자금 총액의 <u>100분의 40</u> 이<br>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br>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br>투자조합<br>나.·다. (생략)                                                               | -----<br>-----<br>-----<br>가. -----<br>-----<br>----- <u>100분의 50</u> -----<br>-----<br>-----<br>-----<br>-----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br>당하는 투자(「벤처투자 촉진<br>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br>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br>을 말한다)를 하는 행위(투자<br>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투자<br>를 포함한다)<br>가. ~ 다. (생략)<br>라. 총자산(운용 중인 모든 투<br>자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br>한다)의 <u>100분의 20</u> 을 초과<br>하는 금액을 해외 기업에<br>투자하는 행위 | 5. -----<br>-----<br>-----<br>-----<br>-----<br>-----<br>-----<br>가. ~ 다. (현행과 같음)<br>라. -----<br>-----<br>----- <u>100분의 30</u> -----<br>-----<br>----- |
| 6. (생략)<br>④·⑤ (생략)                                                                                                                                                                                                                              | 6. (현행과 같음)<br>④·⑤ (현행과 같음)                                                                                                                              |

□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에 대한 주식 보유는 2020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2021년 12월 30일 시행)을 통해 허용된 것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sup>4)</sup>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기존 대기업집단 규제의 핵심적 원칙인 금산분리 기조에 최초의 예외<sup>5)</sup>를 둔 제도임.

□ 다만,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벤처투자 확대, 벤처생태계의 질적 제고, 벤처기업 및 대기업 협력 시너지를 통한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CVC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지주회사 보유 CVC에 대하여는 투자업무만을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를 금지하는 한편, 타인자본을 이용한 대기업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자금 출자를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로 제한하며,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투자는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하였음.<sup>6)</sup>

□ 2023년 12월말을 기준으로 13개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5) 신영수, 새 정부의 대기업집단 규제: 전망과 과제, 경쟁저널, 2022, 213: 36-47.

6)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관계부처합동, 2020.7.30.

고 있으며, CVC가 지주체제 내에서 설립한 17개 투자조합<sup>7)</sup>의 평균 내부출자비중은 82.2%로 조사되었고, CVC 체제 내에서 해외투자<sup>8)</sup>를 한 CVC는 3개사이며 3개사 평균 해외투자비율은 3.6%로 조사되었음.<sup>9)</sup>

####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23.12월 말 기준)>

| 연번 | 지주회사명       | CVC명         | 유형                 | 구분      | 등록일<br>(전환·<br>편입일)           |
|----|-------------|--------------|--------------------|---------|-------------------------------|
| 1  | 포스코홀딩스(주)   | 포스코기술투자(주)   | 신기사 <sup>10)</sup> | 지주 전환   | '04. 8. 18.<br>( '22. 3. 2.)  |
| 2  | (주)지에스      | (주)지에스벤처스    | 신기사                | 신규 등록   | '22. 5. 27.                   |
| 3  | 씨제이(주)      | 씨제이인베스트먼트(주) | 벤처사 <sup>11)</sup> | 체제 내 편입 | '20. 2. 18.<br>( '22. 8. 12.) |
| 4  | (주)두산       | (주)두산인베스트먼트  | 신기사                | 신규 등록   | '23. 11. 29.                  |
| 5  | (주)효성       | 효성벤처스(주)     | 신기사                | 신규 등록   | '22. 9. 22.                   |
| 6  | (주)세아홀딩스    | (주)세아기술투자    | 신기사                | 신규 등록   | '23. 3. 15.                   |
| 7  | (주)엘엑스홀딩스   | (주)엘엑스벤처스    | 신기사                | 신규 등록   | '23. 9. 26.                   |
| 8  | 동원산업(주)     | 동원기술투자(주)    | 신기사                | 신규 등록   | '22. 3. 31.                   |
| 9  | (주)대웅       | (주)대웅인베스트먼트  | 벤처사                | 신규 등록   | '23. 4. 17.                   |
| 10 | (주)빗썸홀딩스    | (주)비티씨인베스트먼트 | 벤처사                | 지주 전환   | '18. 12. 28.<br>( '22. 1. 1.) |
| 11 | (주)에프엔에프홀딩스 | (주)에프엔에프파트너스 | 신기사                | 신규 등록   | '22. 7. 7.                    |
| 12 | 평화홀딩스(주)    | 예원파트너스(주)    | 벤처사                | 신규 등록   | '22. 7. 1.                    |
| 13 | 한일홀딩스(주)    | 한일브이씨(주)     | 신기사                | 신규 등록   | '22. 12. 23.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7) 일반지주회사의 CVC 주식소유시점 이후(지주회사 전환 전 기소유 CVC의 경우 일반지주회사 설립·전환 일 이후) 설립된 투자조합

8) 일반지주회사의 CVC 주식소유시점 이후(지주회사 전환 전 기소유 CVC의 경우 일반지주회사 설립·전환 일 이후) 설립된 투자조합

9) 「2024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 현황 분석·공개」, 공정거래위원회, 2024.6.26.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 외부 출자 비중 제한을 현행 40%에서 50%로 완화하는 것은 일반 지주회사 CVC와 외부투자자가 동등한 비율로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조합의 공동운영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
- 현행 40%의 외부 출자 비중 제한은 타인자본을 이용한 대기업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서 일반지주회사 CVC가 타인의 투자자본을 이용하여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 일반지주회사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향후 외부 자금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sup>12)</sup>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외부 출자 비중 제한을 확대하더라도 외부 출자 비중 제한의 완화에 따른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장의 우려는 낮은 것으로 생각됨.
- 한편, 해외투자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2023년말 현재 일반지주회사 CVC의 평균 해외투자비율이 3.6%라는 점에서 해외투자 비중을 20%로 제한하는 현행 기준이 CVC의 해외투자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국내 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위해 일반지주회사 CVC 해외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투자 비중 제한 완화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투자 경향 및 그 효과를 살피며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1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12) 박용린, “해외CVC현황과 일반지주회사 CVC에 대한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제2021-24호, 2022

<일반지주회사 CVC 해외투자 비중>

| 구분 | 2022년 | 2023년 |
|----|-------|-------|
| 신규 | 3.92% | 2.4%  |
| 전체 | 3.92% | 3.6%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